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에 소급효가 적용되는
사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함(부칙 제2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u>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72
----------	-------

발의연월일 : 2025. 5. 2.

발 의 자 : 이성권 · 이현승 · 박수영
조승환 · 김도읍 · 최은석
곽규택 · 정성국 · 정연욱
권영진 · 김용태 · 주진우
서지영 · 배준영 · 신성범
강명구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7제6항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부칙에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대한 적용례 조항을 두어
개정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함(부
칙 제2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7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은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⑤ (생략) <u><신설></u> <u>⑥</u> (생략)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5항에 따른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은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u>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